

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알리안츠 유럽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_재간접형]
2. 효력발생 예정일 : 2015.06.04
3. 변경 내용 : 1) 종류 C(P)1 (퇴직연금 클래스) 환매수수료 폐지
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3) 투자대상 자산 추가(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)

<집합투자규약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 <생략>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<신설>	① <좌 등>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2. <좌 등> 3. 양도성 예금증서 4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)
제18조 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<생략> 2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<u>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</u> 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생략> 2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,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<u>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,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</u> 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41조(환매수수료)	① <생략>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	① <생략>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<생략> 2. 종류 A, 종류 Ae, 종류 S, 종류 C(P)2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% -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% 3. 종류 C(P)2 : 해당사항 없음 <이하 생략>	-----. 1. <좌 동> 2. 종류 A, 종류 Ae, 종류 S, 종류 C(P)1 , 종류 C(P)2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---- ----- 3. 종류 C(P)1 및 종류 C(P)2 : ----- <이하 좌동>
부칙	(신설)	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 년 06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.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부책임용운용전문인력> 최재희	<부책임용운용전문인력> 강세진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	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,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나-(3) 환매수수료 - C(P)2 수익증권: 해당사항 없음	나-(3) 환매수수료 - 종류 C(P)1 및 종류 C(P)2 수익증권 : 해당사항 없음